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8. 1. 23 - - - - - 옥영복의원의 6인
- 나. 회 부 일 자 : 2008. 1. 28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53회 정례회(폐회 중)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'08.21)
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옥영복 의회운영위원장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(2007. 10. 4)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의정활동 강화 및 회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간 총회의 일수와 제2차 정례회 집회일 조정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 변경 (안 제1,4조)
- 연간 총회의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일수 조정 (안 제3조)
- 제2차 정례회 집회 일자 조정 (안 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본 개정 조례안은 사하구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 조정과 제2차 정례회 집회 일자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(2007. 10. 4)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에 따라 「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」 중 인용조문을 변경하고
- 현재 연간 총 90일의 회의일수를 100일로 10일 늘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의정활동과 효과적인 현지조사 활동 등 내실화를 기하

고자 하는 것임.

- 또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의 연속적인 일정으로 각종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11월 20일로 변경 조정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관련법령 검토와 타 구·군 의회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비교한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